

공정위 발표 자동판매기 구매권유시 피해 예방요령

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 지난해 연말 자판기 구매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요령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. 이 자료에는 자판기 구매의 피해유형을 제시하고 어떠한 점들에 대해 주의를 요해야 하는 지가 명시되었다. 그 세부내용을 살펴봤다.



공정거래위원회

□ 자동판매기 구매자 피해 현황 및 유인방법

<구매자 피해현황>

- 자동판매기 판매업계의 전체적인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, 판매원들의 기만적 방법을 동원한 무리한 판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바,
 -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판매기 관련 피해 상담건은 1999년 762건, 2000년 851건, 2001년 1,403건, 2002년 1,15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 있으며 공정위에도 이러한 피해 신고들이 다량 접수되고 있음.

<유인방법>

- 공정위 및 소비자 관련 단체에 접수되는 부당한 거래 유인방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음.
 - "자판기는 무료로 설치해 줄테니 하루에 5천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은 갖는 대신 관리만 해달라"고 하여 마치 렌탈(임대)계약방식인 것처럼 매매계약을 오인케 함(실제로는 매매계약).
 - 사전 시장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"저희가 사장님 가게 주변을 시장 조사한 결과 하루 커피 50잔만 놓고 계산을 하더라도 연간 약 540만원의 순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" 라고 수익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.
 - "이것저것 빼더라도 월 10만원 정도의 수익은 된다. 만약 예상수익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자판기는 우리가 가져가고 대금은 안내도 된다"고 하여 마치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유도.
 - 판매원들이 유명 대기업의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대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케 함.

□ 구매자 피해예방 요령

○ 계약서 교부 요구 및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

- 자동판매기 구매계약 체결시 판매업자 또는 판매원에게 반드시 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하며,
- 교부받은 계약서에는 ①판매업자 등에 대한 주소,성명,전화번호,전자우편주소 ②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, 종류, 내용 ③재화 등의 거래방법, 거래기간, 시기 ④예상수익율 또는 금액 ⑤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, 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서식 ⑥소비자 피해보상,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⑦거래에 관한 약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함.

○ 확인서 교부 요구

- 자동판매기의 경우 한번 판매되어 사용된 것은 중고 자판기로 인식되어 그 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위가 보급한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에서도 계약 해지시 그 기간에 따라 할부 판매가격 대비 최소 30% 내지 최대 80%의 사용손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
- 상기 유인 방법에서와 같이 판매원이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거나, 사용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음.
- 이처럼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판매원의 정보제공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판매원의 말이나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원에게 동 사항에 대한 확인서 교부를 요구하여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함.

○ 인감도장 등의 요구시 불응 및 확인서 청구

- 구매자에게 자동판매기 파손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명목으로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후 실제로는 판매자가 할부 금융사와 구매자 명의의 할부 판매 계약을 대신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
- 판매원이 인감도장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능한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서를 판매원으로부터 받아 두어야 함.

○ 혼잡한 시간은 피함.

- 판매원들은 구매자가 제대로 계약서 등을 검토할 시간이 없는 고객들이 많은 시간대를 노려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자는 구매의도가 있더라도 동 시간대에는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바람직함.